

# 學校給食의 效率的 運營方案

金命鎬 金周成

延世大 教授醫博 淑明女大 教授醫博

崔吉永 吳姪珍

延世大 保健大學院 助教

## I. 序論

우리나라 학校給食은 1953年以來 外援(UNICEF, USAID 등)에 依存한 救護給食을 實施해 오다가 1978年부터는 島嶼僻地, 農漁村, 都市 등 地域別로 示範學校를 指定하여 年間 30億원 內外의 國庫로 約 10餘萬名의 國民學校 學生에게 학校給食을 實施해 오고 있다. 따라서 國民學校는 勿論 中學校 學生에 이르기까지 全體給食을 또 主副食을 提供하는 完全給食을 實施한다는 것은相當히 距離가 먼 實情에 놓여 있다. 多幸히도 1981년 1월 오랜 期間 宿願이었던 학校給食法이 制定公布됨으로써 今後 학校給食事業 推進에 있어서 커다란 希望을 주게 되었다. 학校給食의 效率的 運營에 있어서는 학校給食의 重要性을 認識하는 일이 急先務이고 食事內容의 改善, 학校給食의 財政確保, 給食의 運營機構의 強化 特司 給食實務의 合理化, 施設 및 設備의 充實, 給食關係職員의 配置 등이 要請되고 있다.

새로 公布된 학校給食法에도 학校給食을 通한 學生의 心身의 健全한 發達을 圖謀하고 나아가 國民食生活 改善에 寄與함을 학校給食의 目的으로 明示하고 있다(第一條). 또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는 營養教育을 通한 食習慣의 改善과 학校

給食의 圓滑한 遂行을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을뿐 아니라 學校給食의 對象 施設, 設備, 運營原則 및 管理基準 專擔職員의 配置, 經濟負擔 등이 規定되어 있다. 今時 學校給食法施行令 및 施行規則이 公布됨으로써 보다 效率的인 學校給食의 推進이 期待되고 있다. 本 調查는 이러한 重要한 時點에서 斷片的이나마 學校給食의 現況을 把握하고 特히 運營上 財政面의 參考事項을 얻고자 서울特別市 釜山市, 大邱市內, 5개校를 現地踏査하여 얻어진 資料를 基礎로 檢討해 본 것이다.

## II. 研究方法

學校給食의 發展을 가져오기 위한 方法의 하나로서 學校給食費의 效率的 運營方案의 模索에 本研究의 目的이 있기에 이 目的에 따라서 調査에 必要한 設問紙를 作成하여 調査對象學校를 訪問하여 다음과 같은 諸項目에 걸친 調査를 하였다.

1. 學校給食의 種類
2. 給食의 實績(月間 給食回數 및 對象人員, 給食內容別 回數)
3. 給食實施의 動機 및 展望
4. 給食에 對한 認識程度(教師, 學父母)

5. 調理場(施設年月, 面積, 構造 및 建築內容)
6. 設備器具(製飯器, 제빵기, 製麵器, 配食器 등)
7. 調理從業員(種類 人員 및 人件費)
8. 燃料(種類, 使用量)
9. 調理從業員 内譯(資格證 有無 및 取得年度 學歷, 經歷)
10. 給食費 支出內譯
11. 給食費 構成
12. 給食管理狀況(食單作成者, 食品材料購入, 檢受 및 購入方法, 給食記錄管理 給食作業 管理者)
13. 學校給食 運營委員會(參席範圍 및 運營效果)
14. 給食에 對한 意見(實態, 必要性, 施設)
15. 給食方法의 改善點

### III. 研究調查成績

1981.3~4에 서울特別市에서 3개校, 釜山市外 大邱市에서 각각 1개校를 指定하여 所定 調查表에 따라 現地踏査하였다.

#### 1. 給食實績

##### (1) 在學生數에 對한 給食人員

5개校에 있어서 在學生數에 對한 給食人員은 最低는 20.3%, 最高는 61.6%, 平均給食人員은 33.8%이었다(表 1 參照).

表 1 學校別 在學生數에 對한 給食人員

學校別	A	B	C	D	E	計
地學生數	6,623	4,364	2,234	2,182	2,860	18,263
給食人員 (%)	1,344	1,162	1,376	985	1,300	6,167

給食希望者數는 實際 給食人員의 約 20%가 더 많았다.

##### (2) 月間 給食回數

調查對象學校의 事情으로 이 項目은 4個校에서만 觀察할 수 있었다.

表 2 學校別 月間 給食回數 (1980.3~12)

學校別	A	B	C	D
給食實施月數	7個月	9個月	9個月	9個月
給食回數	98回	136回	146回	162回
月間平均回數	14回	15.5回	16.2回	18回

※ A는 給食學校 指定 該當年度의 給食回數임.

給食實施月數는 放學關係로 각각 3月부터 12月에 實施하고 있으며 每月 平均 16~18回 給食을 하고 있었다.

#### (3) 給食內容別 回數

表 3 學校別 給食內容別 給食回數

學校別	A(%)		B(%)	
	給食內容	밥	빵	기타
給食內容	밥	3(3.1)	28(20.6)	
	빵	85(86.7)	95(69.9)	
	기타	10(10.2)	13(9.5)	
計		98(100.0)	136(100)	

學校別로 給食內容別 給食回數를 보면 一校에서는 86.7%, 또 一校에서는 69.9%가 빵을 提供하고 있었다. 即 밥은 不過 3.1%와 20.6%만이 給食回數이었다.

#### 2. 給食實施의 動機 및 展望

##### (1) 動機

學校給食의 動機는 文教部로부터의 示範給食學校로 指定(4個校)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1個校에서만이 學生들의 偏食矯正과 健康增進을 위해서 實施하고 있다고 應答하였다.

##### (2) 展望

學校給食의 展望에 對해서는 1個校에서는 學校給食人員의 確保가 어렵고 學校給食의 施設과 環境이 未備라는 應答에 比하여 4個校에서는 給食希望者가 增加되어 3~4年以內에 全體 學生에게 給食이 可能할 것이라고 希望的인 展望을 示唆하였다. 特히 給食實施前에 比하여 學生들의 健康狀態가 좋았다고 있으며 偏食이 줄어가고 食生活改善의 展望이 밝다는 見解로 應答한 學校도 있었다.

### 3. 給食에 대한 認識程度

#### (1) 教師의 認識

學校給食에 對한 教師의 認識은 給食實施로 因해서 教師들의 業務는 늘어나고 번거로움마져 있으나 大體로 크게 보람을 느낀다고 應答하였다. 또 學生들에게 1日 1食이라도 充分한 營養을 提供할 수 있어서 多幸이라고 하였다. 또 教師들에게 點心提供과 給食擔當教師에 대한 附加點數라는 勤務評點上의 利得이 있어서 좋다고 應答하였다.

#### (2) 學父母의 認識

學父母의 學校給食에 對한 認識은 良好한 편이었다. 그러나 給食이 均衡食으로 因한 健康增進과 偏食이 矯正되기 때문이라는 營養學的側面보다는 도시락에 對한 負擔感이 減少된다는 生活의 便宜上 學校給食을 歡迎하고 있는 편이었다.

### 4. 調理場

學校給食對象 學生數와 調理場의 狀況을 보면 다음과 같다(表 4 參照).

表 4 學校別 調理場 內容

學 校 別	A	B	C	D	E
調理場 新築 또는 改 造	크기(坪) 99 鐵筋콘크 리트	60 木材 전물	40 鐵筋콘 크리트	30 煉瓦콘 크리트	23 木材 建物
給食學生數	改造 改造(교실)	改造 改造	新築 新築	新築 新築	改造 改造
	1,300	1,162	1,344	985	1,300

調查對象學校의 給食人口는 985~1,376名인데 調理場의 크기는 23~99坪이었다. 이것은 調理場이 全般的으로 狹小함을 말해주고 있다. 또 調理場의 크기가 반드시 給食學校數에 比例하고 있지 않았다. 調理場은 2個校에서는 新築했으나 다른 3個校에서는 既存建物 즉 宿直室, 家事室, 管理室, 養護室 등을 改造한 것이었다.

### 5. 學校給食 設備器具

#### (1) 諸般器具

제반기구로서 容量 180l의 솔 2개로 1,300名

內外의 밥을 지어내고 있기도 하고, 126l, 90l 들이 솔에 점통(마치 市內 만두집의 쪐만두통과 같음)을 올려 놓고 밥을 짓는데에는 그 점통의 個數를 調整하여 給食人員에 맞추기도 하고 있다. 솔의 價格은 1個當 10~11만원이고 점통은 1個當 1만 5천원 程度로 購入하고 있다. 이以外에 좀 改善된 方法으로 제반기를 使用하여 便利하고 經濟的으로 밥을 지어 給食하는 學校도 있었다. 제반기는 650名用이 50萬원이고 밥을 짓는 時間은 1後間 10餘分 程度 所要되며, 50名 分씩 나누어지기 때문에 配食하는데로 손쉽다고 하였다(表 1 參照). 또한 제빵기에 제반을 煉하는 學校도 있었다. 이는 個人別로 個人用 食器를 따로 만들어서 이 食器에 1人分의 주곡과 물을 부어 “빵철판” 또는 식기거리에 놓거나 걸어서 빵을 굽는 오븐속에 밀어 넣어서 밥을 짓는 것이다.

이것을 使用할 때는 長點으로 個人別 食器로 되어 있어 配食에는 便利하나 食器의 重이 높아서 세척하는데 잘 셋기지 않아서 隘路가 많다는 것이다.

#### (2) 제빵기

제빵기는 밥을 짓는 것과는 달리 이스트라는 微生物을 繁殖시켜 食品(빵)을 만드는 것이므로 제빵기구는 이스트가 繁殖하는 過程別로 器具나 繁殖에 必要한 條件을 賦與하기 위한 施設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即 반죽기, 발효실(1, 2次), 발효통, 라카, 鐵板, 오븐 등이 그 基本的인 것이다. 이 제빵施設은 1,000~1,200名을 給食하기에는 約 360萬원 대지 380萬원이 所要된다.

#### (3) 配食器具

學校當局에서 學級別로 국통과 밥통을 準備하고 學生各個人이 국그릇과 식판을 마련하고 있다. 국통은 容量에 따라 個當 1,980~9,000원에 購入하고 밥통은 4,500~5,200원에 購入하고 있다.

調理器具에 所要된 全體 經費는 學校에 따라서 360~630萬원이었고 給食人口와는 正比例되지는 않았다.

#### (4) 冷藏庫

食品貯藏用 冷藏고는 모두 設備되어 있으나

各各 180l, 350l 및 700l의 容量의 3種이었다.  
그중 營業用 아닌 家庭用은 적은 容量에 冷藏庫  
製造材料 自體가 스테인레스가 아니기 때문에  
食品을 貯藏하는 주방에 使用하기 適合하지 않  
아서 다른 用途 등으로 使用하고 있기도 했다.

## 6. 調理場從業員

學校給食에 從事하는 調理從業員은 各 學校에  
따라 大差를 볼 수 없고 그 內容을 보면 다음  
表5와 같다. 即 調理從業員은 每校當 6~9名이  
있으며 영양사, 제빵기사, 제빵기사보조원은 모  
든 學校에서 각각 1名씩이었고 正式 調理士는  
없었다. 그러나 食品衛生法, 施行令 第14條에  
學校寄宿舍, 矯導所, 公務員 教育院의 給食所 등  
에는 調理士의 義務的 配置를 排除하고 있기 때  
문에 學校給食에 꼭 調理士를 두어야 할 必要는  
없는 것으로 보아졌다. 調理補助員은 3~6名이  
配置되어 있지만 이들은 모두 非專門의인 一般  
婦人들로서 營養士의 指示에 따라 補助의 役割  
을 하고 있었다.

表 5 學校別 學校給食 從業員

學校別 從業員	A	B	C	D	E	平均
營養士	1	1	1	1	1	1
제빵기사	1	1	1	1	1	1
調理補助員	3	3	3	4	6	3.8
제빵補助員	1	1	3	1	1	1
計	6	6	6	7	9	6.8

調理從業員들의 報酬를 살펴보면 營養士는 月  
100,000~152,300원의 範圍에 이르렀고 제빵技  
士는 月 60,000~92,900원이었다.

또 調理補助員은 月 40,000~80,000원으로 學  
校에 따라서 差異가 있었다.

調理委員의 資格, 學歷 및 經歷 등을 보면 다  
음과 같다.

營養士는 大學卒業者 또는 專門大學卒業者로  
서 有資格者이었고 經歷은 3~4年을 가지고 있  
었다.

제빵기사는 高校卒業者로서 有資格者와 無資  
格者가 있으며 經歷은 1~2年이었다. 제빵補助  
員 또는 調理補助員은 國民學校卒業者 또는 其

以下로서 經歷도 1年 內外였다.

## 7. 學校給食 調理用 燃料

燃料는 主로 輕油를 使用하고 煉炭을 併用하  
는 곳이 1校이었다(表 6).

表 6 學校別 給食調理用 燃料使用 內譯

學校別	A	B	C	D
燃都市가스				
料프로판가스				
경유(드럼)	40	92	34.5	64
種연탄(장)		2,000		
類기타				※23
燃料代(₩)	1,591,820	3,744,200	1,338,000	3,353,000

※火木임.

燃料代는 學校에 따라서 다르고 給食對象 1人  
當 1回分의 燃料代를 算出한 結果 7.2~32.9원  
으로 一定하지는 않았다(表 7).

表 7 學校別一回一人當 給食調理用 燃料代

學校別	A	B	C	D
給食對象人員 (名)	1,344	1,162	1,376	1,300
給食回數	98	98	136	146
給食延人員數 (名)	131,712	113,876	187,136	189,800
總所要燃料代 (₩)	1,591,820	3,744,200	1,338,000	3,353,000
每人每回燃料 代(₩)	12.1	32.9	7.2	17.7

## 9. 給食費 支出內譯

給食費는 3個校에 있어서의 對象學校로부터  
提示한 資料의 調査에서 學校別로 볼 때 食品費  
는 全體 給食費의 각각 83.3%, 78.8% 및 63.2  
%이었고 施設費는 新設學校 26.9%를 除外하고  
는 각각 0.9%와 0.4%에 不過하였다. 運營費는  
20.2%, 16.3% 및 10.6%이었다(表 8).

運營費에 있어서도 燃料費는 學校에 따라서  
39.3%, 34.1%, 22.5% 人件費는 55.4%, 49.3  
%, 48.6% 그리고 其他 收容費는 27.9%, 17.3  
%를 占하고 있었다. 큰 意義는 없지만 3個校  
만 가지고 볼 때 食品費는 74.3%로 主宗을 이

表 8

## 學校別 支出內譯別 給食費

子 分	A(%)	B(%)	C(%)	計
食 品 費	42,124,151(63.2)	48,691,939(88.3)	38,278,000(78.8)	129,094,090(74.3)
施 設 費	17,500,000(26.2)	204,700(0.4)	450,000(0.9)	18,154,700(10.5)
運 營 費	7,079,676(10.6)	9,536,860(16.3)	9,826,000(20.2)	26,442,536(15.2)
(燃料費)	(1,591,820)(2.4) (22.5)	(3,744,200)(6.4)	(3,353,000)(6.9) (34.1)	
(人件費)	(3,509,200)(5.3) (49.6)	(5,283,950)(9.0) (55.4)	(4,773,000)(9.0) (48.6)	
(其他收容費)	(1,978,656)(2.9) (27.9)	(508,710)(0.9) (5.3)	(1,700,000)(3.5) (17.3)	
計	66,703,827(100.0)	58,433,499(100.0)	48,554,000(100.0)	173,691,326(100.0)

※ A는 新設年度의 給食費이었음.

表 9

## 學校別 給食費負擔內譯

學 校 別	國庫 및 地方費	學 父 母	學 校 自 體	其 他	計
A	12,499,200(18.7%)	47,204,627(70.8%)	7,000,000(10.5%)		66,703,827(100%)
B	3,738,676(6.4%)	54,694,823(93.6%)			58,433,499(100%)
C	1,288,000(3.0%)	41,082,00(97.0%)			42,370,000(100%)
D	4,323,000(8.9%)	44,231,000(91.1%)			48,554,000(100%)

루고 있었으며 施設費는 10.5%, 運營費는 15.2%의豫算이 投入되고 있었다. 이 比率은 新設, 既設에 따라 差異가 있음을勘察하여야 할 것이다.

## 10. 給食費構成內容

給食費를 國庫 또는 地方費, 學父母의 負擔 그리고 學校自體의 負擔으로 區分하여 觀察해 봄 때 國庫支援은 新設學校나 既設學校에 따라서 給食費의 18.7%, 8.9%, 6.4%, 3.0%이었고 學父母의 負擔은 각각 97.3%, 91.1%, 70.8%이었고 그리고 學校自體의 負擔은 없는 편이었다(表 9).

## 11. 給食管理狀況

食單作成은 모든 學校에서 營養士에 依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食品材料購入者는 庶務主任 또는 庶務職員이 대부분이고 給食委員會 幹事 또는 庶務職員과 營養士共同으로 購入하는 境遇도 있었다.

食品材料 檢受는 庶務室에서 購入했을 경우는

營養士 또는 養護教師가 하 고 營養士가 購入에 關與했을 때는 養護教師가, 또 給食委員會 幹事가 購入할 경우는 營養士가 檢受를 하고 있었다.

給食에 대한 記錄管理者는 모든 學校에서 營養士이었고 調理 등 作業管理者도 營養士의 경우가 大部分이고 1校만이 調理土의 協助를 얻어 營養士가 役割을 하고 있었다.

食品材料 購入方法은 區區하였으며 庶務室을 通하여 工場購入, 一部는 工場購入 一部는 農協을 通한 購入의 形態를 取하고 있었다.

## 12. 學校給食 運營委員會

運營委員會의 參席者は 學校內 關係職員, 學父母代表, 地域社會, 有關機關 代表 등으로 構成되었으며 學校에 따라 적은 部分의 差異가 있을 뻐름이었다.

運營委員會의 效果로서 評價된 內容은 給食改善에 寄與된 바가 크다고 했고 給食에 關한豫算策定, 食單의 作成, 食品材料의 購入 등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또 學父母와 學校當局間의 意思소통에 크나큰 仲介 役割을 하

表 10

學校給食運營委員會의構成

學校別	校長	校監	教師	庶務	校醫	齒科校醫	養護教師	營養士	育成會長	區廳長	保健所長
A	○	○		○	○	○	○				○
B	○	○		○	○	○	○	○			
C	○	○	○	○			○	○	○	○	
D	○	○	○	○			○	○			○
E	○										

고 있다는反應이었다.

學校給食에 대한評價會도 大部分의 경우 運營委員會가 겸하고 있었고 이와 같은 評價會를 통한評價는 給食의 改善에 크게 寄與하고 있다 는 것이었다.

### 13. 學校給食에 대한 意見

學校給食에 대한 意見은 現行給食을 中心으로 給食의 必要性, 給食의 方法, 給食施設 및 給食의 從人人員에 대한 것을 問議한 結果 다음과 같은 應答을 얻었다.

(1) 現行 給食은 全體 學生이 對象이 아니기 때문에 對象과 非對象의 違和感이 두렵다는 意見以外에는 大體로 良好하다는 反應이었다.

(2) 給食의 必要性에 있어서는 學生들의 營養增進이나 健康管理에 또 偏食矯正이나 食生活改善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3) 給食方法에 있어서는 現在는 希望者에게 만 즉 部分給食에 그치고 있으나 될 수 있으면速한 時日에 全體 學生에게 完全給食이 이루어 졌으면 하였다.

(4) 給食施設에 있어서는 調理場을 新築하여 滿足스러울 뜻도 있지만 國庫로 支援해서라도 不足施設을 補完해 주고 老朽化된 器具나 設備를 現代式으로 바꾸어 주기를 願하고 있었다. 또 뒤김기 野菜切斷機, 탈피기 食器세척기 등 所要器具의 補完도 願했다.

(5) 學校給食 從業員은 6~7名은 不足할뿐 아니라 人件費의 引上으로 待遇를 改善하고 從業員의 資質을 向上시킬 것을 呼訴하였다.

本 調査에 있어서 對象學校中에는 消極的인 協助로 所期한 目的을 達成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 IV. 考案

本 調査研究는 調査對象學校나 人員이 너무나 僅少하여 全般的인 考察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制限性이 많지만 檢討할 수 있는데까지 考察해 보기로 한다.

(1) 給食人員 우리나라의 學校給食의 對象은 本 調査에서는 23.8%를 나타냈다. 外國과 比較해 보면 日本의 경우는 國民學校에서 99% 그리고 中學校에서 83%의 學生들에게 給食을 施行하고 있는 點과 너무나 거리감이 크다.

### (2) 給食回數

給食回數는 月間 平均 16~18回에 不過하였다. 이것은 調査期間 10개월間에 대한 것이지만 分析할 때 放學期間과 授業期間에 있어서도 土, 日曜日 및 公休日에는 給食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各學校 個別로 學校給食 施設을 갖추었을 때 이러한 非給食日이 차지하는 比率이 클수록 給食施設費의 效用이 減少된다고 할 수 있다.

### (3) 給食內容

새로 制定 公布된 學校給食法 施行令이 定해지지 않은 現在, 文教部令으로 規定한 學校給食規則에 따라 給食內容을 定하는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르면 “學校給食의 内容은 地域實情에 따라 學校給食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定하고 정해진 營養基準의 目標에 도달되도록 實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各 學校에서 實施되고 있는 것은 아직 主食爲主를 免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主食도 빵이냐 밥이냐 하는 問題에 있어서 여러모로 빵의 長點이 採擇되고 있다. 本調査에서도 밥(3.1~20.6%)에 比해서 빵(69.9~86.7%)을 보다 많-

이 給食하고 있었다. 그런데 빵을 굽는 技士나 給食시키는 教師나 빵에 대한 常識이 全然 없었다. 한 예로 빵을 學校에서 구으니까 굽는 即時 먹을 수가 있어서 쫀득거리는 맛있는 빨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事實 이러한 빵은 未熟된 빵이고 消化에도 나쁜 것이다. 빵도 밥과 같이 뜸이 드는 時間이 必要한 것이다. 이 時間은 겨울일 경우 2時間 여름일 경우 6時間 程度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어진 後 6時間程度에서 먹는 것이 가장 理想의이고 일주야 程度는 變化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빵의 標準인 것이다.

#### (4) 給食의 動機 및 展望

學校給食의 動機는 大部分의 國家가 救護를 目的으로 實施하게 되었다. 1796年 독일 뮌헨市에서나 1849年 빠리市에서나, 1864年 런던市에서나, 1889年 日本에서나 다 같이 貧困한 學生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기 爲하여 시작되었다.

다만 1932年 미국에서는 잉여농산물의 有效한 活用對策으로 學校給食이 출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例外없이 缺食兒童의 救護로부터 시작되었다. 本 調査에서 學生들의 偏食矯正과 健康增進을 爲해서 給食이 實施되고 있다는 것은 學校給食이 그만큼 成長되었다는 證票일 것이다.

學校給食의 展望은 本 調査에서 볼 때 낙관적이고 建設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傾向은 앞으로 學校給食 發展에 도움이 될을 안다. 全體學生을 對象으로 營養面 疾病管理面에서나 成長 및 發育面에서 完全給食을 바라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 (5) 給食에 대한 認識

給食에 대한 從前의 給食管理者들의 意見은 背定의인 것보다 否定의인 것 많았다. 即 學校給食의 管理責任者인 擔當官, 獎學士 및 學校長은 給食의 必要性을 35%만이 認定하고 65%는 不必要하다고 했으며 그 理由로는 學生들의 成長과 發育에 給食이 別로 도움이 안된다고 主張하였다. 이에 比해서 一般教師는 65%, 特히 示範學校給食의 實務者들은 84%가 給食은 必要하다고 主張하였다. 本 調査에서는 一般教師들이 給食때문에 時間과 努力이 많이 消耗되지만 보람

을 느끼고 있었다.

學父母의 學校給食에 대한 認識이 良好한 點은 學校給食의 擴大 및 強化에 있어서 앞으로 希望의인 面을 보여 주고 있다.

#### (6) 調理場 施設

本 調査에서는 모든 學校에 調理場은 있었으나 그 크기, 構造 등에서 많은 問題를 包含하고 있었다. 團體給食의 設置基準에 適合하느냐도 그 하나이고 또한 學校給食에 알맞는 衛生의 建物이냐도 檢討對象이 된다고 보아야 하겠다. 既有建物의 改造에 있어서는 慎重한 考慮가 要水되고 있다.

#### (7) 學校給食 器具

給食用 器具의 設備에 있어서 계반기, 제빵기 配食器具 및 병장고 등을 볼 수 있었다. 學校給食에 必要한 施設이나 設備는 給食學校 自體로서는 財政確保가 到底히 어렵고 外國의 경우도 國庫補助에 依存하는 경우가 많다.

제빵기는 1校當 360萬원~380萬원을 投資하고 있지만 學校給食은 授業期間 全期間에 걸쳐서 實施한다고 해도 土, 日曜日을 除外하면 180回 内外에 不過하고, 本 調査에서는 年間 120~135回의 給食에 不過하였다. 거기다 밥이나 其他로 給食하는 날을 빼면 빵을 給食하는 것은 年間 100여일에 치나지 않는다고 볼 때, 360~380萬원을 投資해서 1年에 100여일만 가동하고 260여일은 유휴시켜야만 되고, 제빵을 위한 제빵기사나 그 補助員은 1年에 260여일은 놀리고 人件費를 支拂해야 한다는 結果이다. 그렇다고 어린이의 嗜好를 無視하고 每日 빵으로만 給食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投資의 浪費를 막고, 合理의인 給食方法을 模索해야 한다고 본다. 元來 學校給食은 展示性이 없는 莫大한 財政이 所要되며 學校給食을 忌避하는 事例를勘案하여 投資效率化를 期하는 것은 곧 學校給食 發展의 첨경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 (8) 調理從業員

우리 나라에서 學校給食을 專擔할 營養士를 각 給食學校에 配置하게 된 것은 最近의 일이다. 本 調査에서도 각 學校마다 營養士는 1名씩 配置되어 있었다. 그리고 調理補助員이 學校에 따

과 3~6名이 採用되어 있었고 제빵技士와 제빵기사 補助員이 각각 1名씩 配置되어 있었다. 그러나 全般的으로 볼 때 給食調理要員은 不足한 便이고 그 報酬도 生活費의 最底基準에도 未達한 形便이었다. 이를 學校側에서 보면 學校給食은 年間 持續的으로 每日 供給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人件費의 浪費로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 (a) 給食調理用 燃料

給食調理用 燃料는 學校에 따라서 輕油, 輕油와 煉炭, 輕油와 火木을 使用하고 있는 學校로 나눌 수 있다.

都市學校이면서도 使用하기 便利한 都市가스나 프로판가스를 使用하지 않고 있는 理由는 非經濟의이기 때문일 것이다. 現在 어느 學校에서나 輕油를 主로 쓰고 있는데 1人 1回當 所要된 燃料代가 ₩71.5~328.7의 差異가 있는 것을 볼 때 檢討되어야 할 餘地가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燃料費는 全體 給食費의 不過 2.4~6.9%밖에 차지 않고 있다.

#### (10) 學校給食費

給食費의 큰몫을 차지하는 것은 食品費(63.2~83.3%)이고 特殊한 경우를 除하고는 다음으로 運營費(10.6~20.2%)이다. 運營費에 있어서는 人件費(48.6~55.4%)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質, 量의으로 보다 나은 給食은 食品費의 増殖에 있다고 본다. 一定한 基準을 갖추기 爲한 施設費의 投入後에는 運營費를 節約하고 食品費를 늘려야 한다.

給食費의 構成內容에서는 施設 및 設備費는 國庫 또는 地方費의 補助로 食品費는 部分으로 受益者負擔이 不可避할 것이다.

#### (11) 給食管理

給食에 食品의 購入, 檢受, 貯藏 調理, 記錄 등 一連의 節次는 學校에 따라서 區區하나 이것은 가장 適切한 執行모델을 監督廳에서 提示하여야 할 것이다.

#### (12) 學校給食에 대한 意見

給食에 대한 教育監督廳 人士 學校當局 學父母 및 學生, 自身들의 意見에 대해서는 많은 研究가 있었다. 그러나 大部分의 경우 全體 學生에게

대한 完全給食을 바라는 意見이 壓倒的이었다.

## V. 結論

1953年 以來 우리나라 學校給食의 實施過程은 여러 形態로 거쳐 왔으나 1981年 1月 드디어 學校給食法의 制定 및 公布를 보게 되었다. 이제 學校給食의 制度化에 拍車가 加해진 셈이다.

本 調査는 이하한 重要한 時點에서 보다 能率의인 學校給食法, 施行의 一助가 되기 위해서 不過 5개校에 지나지 않지만 給食狀況을 部分의이나마 把握하여 當局에 建議하고자 이룩된 것이다.

1. 調査對象學校의 給食人員의 比率은 學校當局, 學父母의 認識과 比例하였다. 特히 學校管理者의 影響이 큰것 같았다.

(2) 給食回數는 月間 平均 16~18回로서 土, 日, 公休日에도 給食하지 않고 있었다. 特히 우리나라에서 土, 日曜日은 非給食日로 한것은 給食制度自體가 歐美에서 發展하였고 이들 나라는 土曜日도 授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給食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본땄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3) 給食內容은 빵이 大部分(69.9~86.7%)으로서 밥의 提供은 아주 적었다.

(4) 給食에 대한 動機와 展望은 健實하였다.

(5) 給食에 대한 認識은 肯定的인 傾向이었다. 특히 教師들의 認識은 勤務評定上의 附加點의 影響이 큰것 같았다. 이는 學校給食으로서 誘引策으로 바람직하나, 진정한 發展을 위해서는 教師 스스로 學校給食을 認識해야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爲해서는 營養發育이나 學校給食에 對한 研究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一般教科의 教材研究는 있어도 學校給食의 研究는 없는 것이 現實情이 아닌가 한다.

(6) 調理場 施設은 모두 갖추어 있었으나 크기 構造 등은 不充分하였다.

(7) 給食器具는 제빵기에 360~380萬원이 投入되어 있어 年間 給食回數나 減價償却 등을 고려할 때 浪費로 여겨졌다. 學校別 제빵 施設問題는 多角度로 檢討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졌다.

<28p.에 繼續>

다는 성질로 전신질환으로 보는 경향도 있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항암제는 암세포의 발육을 억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 많은 종류의 항암제가 나오고 어느정도 좋은 효과도 얻고 있다. 특히 임파종파 백혈병 등 몇몇의 암에는 항암제 치료가 결정적인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항암제는 부분적 치료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치료에는 아직도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외에 면역학적 치료제인 인터페론(INTERFERON)이란 물질이 종양세포억제제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실제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나 결과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암의 약물치료효과는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약물치료가 암의 근본적인 치료방법이 될것이다. 마지막 방법이 방사선치료로 이는 강한 방사선에 의하여 암세포의 파괴에 있는데 방사선에 대한 세포의 감수성은 미분화된 세포일 수록 높다. 즉 방사선치료에 잘 치유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정상세포도 파괴시킴으로 문제가 있고 분화가 잘된 암, 즉 위암이나 간암등에는 적용이 안된다. 현재 방사선치료의 대상은 전이가 된 암, 자궁암, 임파암 및 피부암등 제한되어 있으나 자궁암, 피부암에 가장 좋은 치료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암치료는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치료법의 복합적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수술과 병행하여 약물요법 또는 방사선 요법을 겸용하거나 약물요법과 방사선치료를 동시 또는 병행해서 실시하므로 단독적인 치료보다 훨씬 높은 치료효과를 보고 있다.

#### <46p.에서 繼續>

(8) 洋 장고는 實用價值에 비추어 大型이 要求 되었다.

(9) 調理要員의 絶對數가 不足하며 待遇改善이 切實히 要請되었으며 營養士는 學校組織內의 位置上 그 役割을 다 할 수 있도록 制度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다(例, 營養教師)

癌의 예방 역시 어려운 문제이다. 암의 특성이 다른 질병과 판이하게 다른 데도 암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주위에서 완전히 제거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로 가능한 예방책을 두가지로 요약하려 한다. 첫째 환경오염의 예방이다. 여러가지 오염물질들, 앞서 말한 암의 원인이 가능한 물질들의 노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산업장, 공장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오염원을 차단하는 환경정화가 암을 예방하는 길이고 여러가지 약제의 남용을 억제해야 한다. 둘째로 암의 조기발견 조기치료이다. 이는 위암에서 조기발견 치료로 완치율은 95%이고 진행 위암인 경우는 5년생존율이 40%를 넘지 못한다는 사실로 조기발견치료의 필요성은 다시 강조된다. 이를 위하여는 일반사람의 암과 조기발견 이란 의미의 인식도를 높여야 하고 정기적인 정밀검진단검사만이 유일한 해결방법이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위암의 정기집단검진의 시행으로 획기적인 성과를 보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자궁암의 검진을 일부시행 될 뿐 위암에서는 암 발생빈도의 제일위로 가장 많은 암이면서 사람들의 인식도 및 제도적 뒷받침의 결여로 효과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결핵퇴치를 위한 집단검진 방법을 위암집단검진에 도입한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제도화해야 하겠다.

부연하여 암예방을 위하여 건강한 사람도 적어도 년 1회의 정기적인 건강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 암은 불치병이 아니고 치유할 수 있는 질환이며 금세기 말까지는 암은 정복될 것이다.

(10) 納食調理用 燃料는 輕油를 主로 쓰고 있고 學校에 따라 1人 1回 納食에 消耗된 燃料費에 差異가 많았다.

(11) 納食管理는 一定한 職務指針이 上部監督廳으로부터 各學校에 示達되어야 하고 各學校에서는 그에 따른 施行이 要求되었다.